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72 발의연월일: 2020. 9. 7.

발 의 자:이태규·성일종·박대수

최연숙 • 이명수 • 김영식

김정재 · 김석기 · 허은아

윤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법 중 하나로 "유가증권의 매입"을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시행령에서 증권대여를 허락하고 있고, 이 증권대여 목적이 공매도 사용과 의결권 행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직역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.

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,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,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(안 제53조의3제3항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5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3제2항제2호 중 "매입"을 "매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의3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	제53조의3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	②
으로 운용한다.	<u>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	2
권의 <u>매입</u>	<u>메메</u>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
	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
	<u>된다.</u>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